

[사 건 명] 행심 2015-20

학교폭력에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5.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초등학교 학생으로 동급생인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하여 2015. 5. 20.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되었고, 그 결과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5. 5. 27.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바, 2015. 6.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교육부 지침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할 경우 ‘성급하게 화해를 중용하지 말 것과 자치위원회 결정 전 가·피해학생을 단정 짓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담임선생님은 5. 6. 이 사건 해결을 위해 내교 한 청구인의 모친에게 “요즘은 쌍방과실로 결론 나는 게 많은데 괜찮겠느냐” 라며 자치위원회 전에 쌍방폭력으로 취급할 것임을 단정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처리를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사안으로 처리하고자 청구인 측에게 자세한 설명도 없이 ‘화해 및 재발방지 확인서’ 에 서명토록 하여 5. 12. 제출하였고, 다음날인 5. 13. 사과와 자리에서 ●●● 학생이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자 청구인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다. 이처럼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을 성급하게 담임종결 사안으로 종결하고자 했으며 ‘화해 및 재발방지 확인서’ 는 사과가 선행되지 않았는데도 작성토록 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 나.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청구인의 모가 하지도 않았던 “사인하면 마무리 된다고 했다” 라는 말이 허위로 기재 되어있고, ●●● 학생의 모친이 자치위원회에서 “울며 사정 하며 전화를 했다” 라는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자치위원회 회의록 내용 중에는 청구인이 했던 말들이 편집되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믿기 어려우며, 가해 학생들의 거짓 진술 등에 근거하여 제대로 된 사안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쌍방과실로 처분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다. 피청구인은 5. 26. 자 결과 통지서에 있는 “단체 카톡에서 너 좀 찌그러져 있으라는 말과 함께 욕을 함” 이라는 내용을 ●●● 학생의 부친이 강력한 항의로 5. 29. 자로 삭제하여 재 통지 하였으며, 이로 인해 ●●● 학생의 사이버 따돌림이 제외되어 학교폭력이 축소·은폐되었고, 결과 통지서를 수정하면서 청구인 측의 동의나 사전통지도 없었다.
- 라. 청구인은 3월 초에 ●●● 학생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서 장난으로 또는 살짝 뺨을 건드린 것이고 이 같은 행위는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로 신체적 폭력에 해당되지 않으며, ●●● 학생에게 청구인은 강도가 더 세게 등, 옆구리, 배 등을 가격 당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사물함의 물건을 옮긴 것도 숨긴 사실을 ●●● 학생이 알기 전에 먼저 고백하고, 1분도 안되어 제자리에 물건을 갖다 놓고 사과 한 것으로 학교폭력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이다.

- 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으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싸다귀’ 장난 이후로 ●●● 학생 등은 청구인을 따돌리기 전까지 서로 잘 어울려 다녔고, ●●● 학생도 같이 장난을 친 것이므로 학교폭력으로서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측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가해학생 측에서 진심으로 화해할 생각이 없었기에 화해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장난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 일과 사물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옮겨 놓은 일 등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바. ●●● 학생 등은 집단으로 청구인을 화장실, 복도, 계단, 교실, 상담실 등으로 불러내어 한 달도 넘은 당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였고, 단적으로 사귀는 친구도 이간질 시켜 못 놀게 하였으며, 단체 카톡방에서 청구인의 험담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괴롭혔는데, 이러한 일을 주동 한 ●●● 학생이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면 이보다 경미하고 장난으로 했던 청구인은 조치가 없어야 마땅한데,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한 조치이므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사. 청구인 측은 4. 13. 처음으로 담임선생님께 청구인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 및 심각성을 알렸으나, 정확한 증거 없이는 해결이 어렵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집단 따돌림을 멈추게 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억울했지만 증거와 증인을 찾기 전까지는 학교폭력으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참아야 했다. 또한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은 ●●●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사과만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담임교사에게 아이들을 불러 서로 사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면담 도중 담임교사는 자치위원회가 열린다면 쌍방폭력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아. 2015. 5. 11. 17:05분경 관련 학생 어머니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화해 및 재발방지 확인서’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의 모친이 현장에 간 것은 18:50분경 이어서 청구인의 학부모를 제외한 다른 부모님들에게만 안내하고 사건종결 논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청구인의 모친이 그 후 도착하였으나 위와 같은 설명을 해주지도 않았고, 다음날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 화해 및 재발방지 확인서임을 알게 되었다.

자.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친구들 간에 장난으로 한 행위와 ●●● 학생 등이 청구인에게 행사한 집단 따돌림 등의 행위의 경중을 판단하지 않은 채 한 조치이고, ●●● 학생이 가한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부인하며 폭력 사실을 축소하는 등 편파적인 조치이며, 몇 달간의 학교폭력으로 신음하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신고하였음에도 오히려 억울하게 피해학생을 가해 학생으로 만들어 버린 조치이므로, 피청구인의 위법, 부당한 처분은 시정되어야 한다.

Ⅲ.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모는 2015. 4. 13.부터 상담을 요구하여 담임교사와 윤리부장이 면담 시 마다 2~3시간 동안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였기에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의 모친은 청구인의 얘기만 듣고 이 사건을 집단따돌림이라 판단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여, 일방적인 사과만을 요구하였다. 또한 담임교사가 “쌍방과실로 결론 나는 게 많은데 자치위원회를 개최해도 괜찮겠느냐” 라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처분 결정전에 가·피해학생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자치위원회에서 관련 자료 검토 및 관련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하였다.

나. ●●● 학생은 청구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뺨을 3대 맞고 억울하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상담을 통해 시비를 가려보자 하여 청라초등학교 WEE 클래스에서 상담한 사실이 있다. 학기 초 교우들끼리 서먹한 상태인데도 청구인의 장난기로 다른 부위도 아닌 뺨을 때린 것은 고의성이 엿보이며, 사물함 물건을 허락 없이 옮겨 놓은 사실 등도 ●●● 학생 측에서 매우 기분이 나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장난, 사소한 행위, 무심코 한 행위라도 피해 학생이 고통을 호소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 다. 2015. 5. 11. 17:05분경 관련 학생 어머니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 외 4명의 모친들은 청구인의 모친이 원하는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하며 방법을 물어보았기에, ‘화해 및 재발방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 것이고, 이에 따라 관련 학생 및 보호자는 ‘화해 및 재발방지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 측에서 학생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였고, 5. 13.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는 자리까지 마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와 ○○○ 학생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학교의 대처가 미온적이라 주장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해결할 것을 요구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라. 청구인의 민원 제기로 ▲▲교육지원청에서 2회의 현장 점검을 통해 자치위원회 절차 및 회의록 상의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 받았다. 회의록은 속기록과 달리 7시간 30분에 걸친 자치위원회 모든 내용을 기록할 수는 없는 것이며, 회의록 기록 내용이 왜곡 되었다는 주장 및 학생들의 거짓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마. 결과 통지서의 ‘너 좀 찌그러져있어’ 라고 한 것은 청구인의 친구(청구인의 전전 학교 친구)가 ●●●에게 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정하여 재 통보한 것이지 ●●● 학생 부친의 강력한 항의에 의한 축소·은폐할 목적으로 수정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바. 청구인과 담임교사 면담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 학생의 얼굴을 세 번 정도 때렸으며, 두 번째 때렸을 때 ●●● 학생이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장난이라 생각하고 때렸다고 하였다. 3월경에 유행하던 ‘신동엽 싸다귀’란 장난을 다른 학생들은 모두 흉내만 내며 놀고 있었지만 청구인은 실제로 ●●● 학생의 얼굴을 때렸고 하지 말라는 표현을 했음에도 더 때린 것은 폭력에 해당하는 것이라 판단했으며, ●●● 학생이 청구인의 옆구리 배 등을 웃으면서 마구 세게 때렸다는 청구인 측의 주장은 확인 되지 않은 사실이다.
- 사. 학교폭력의 유형 중 신체폭력이라 함은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으며,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교육부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명시되어있다. 뺨을 3회 때린 행위, 사물함 물건을 말없이 옮겨 놓는 행동 등을 고려 할 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 처분은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서 향후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우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대리인 각 구술심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15. 3. 초순경 학교 내에서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뺨을 3회 때리고, 피해학생 소유의 물건을 피해학생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옮겨 놓은 사실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2)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얼굴을 때린 것이 아니고, 손으로 뺨을 건드렸을 뿐이라고 하지만 피해학생은 뺨을 맞았다고 하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처음 얼굴을 건드렸을 때에는 피해학생이 특별히 거부하지 않고 장난으로 받아주었다고 하나, 두 번째 건드렸을 때에는 피해학생이 거부반응을 보였다고 하며, 세 번째 건드렸을 때에는 피해학생이 거부할 것을 알면서도 건드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3) 청구인은 피해학생 소유의 물건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입으로 위치를 옮겨놓은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장난이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다시 제 자리에 가져다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리거나 때리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할 것이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옮겨놓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 4) 그러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위법·부당 여부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이 자신의 행위를 학교폭력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갈등이 발생될 우려되므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삼아 학교생활

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청구인에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함으로써 서로 화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절하다 할 것이다.

- 3) 더불어 이 사건 처분의 경중에 대하여도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가장 경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서면사과를 이미 하였으며, 청구인의 이 사건 행동의 경위 등을 감안하면 적정한 처분이라고 보여지는 만큼,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의 기타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위에서 판단한 것 외에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청구인 및 피청구의 대리인 각 구술심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인정 할 수 없다할 것이다.

라. 결론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